



질병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관련 변경 안내

1. 귀 기관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예방접종관리과-1234(2021.3.9.), 1878(2021.4.5) 관련입니다.
3.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전자계약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니 계약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 서면계약 체결한 의료기관(~2021.3.4)은 서면계약 종료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서면계약 종료일까지 전자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면계약 종료일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서면계약 종료일	2021.4.13.(화)	2021.4.30.(금)	4.30.(금)까지 전자계약 미전환시 <u>5.1.(토)부터 비용상환 불가</u>

나. 위탁계약 관련 서류

1)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HPV, B형간염 주산기 포함), 성인 인플) 참여 의료기관은 작성 불필요

2) 교육수료증

○ 대상: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2021.3.4),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신규 참여의료기관

*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온라인 교육 반드시 이수 필요

○ 교육과정: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2021)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1)" 과정도 반드시 이수 필요

3) 통장사본

* 기존 성인 인플루엔자 참여 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

4)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확인증 제출(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 제출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

다.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준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라. 협조 요청 사항

-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 2021.3.4.) 의 경우
 - 서면계약 종료일(2021.4.30.(금))까지 반드시 전자계약 전환 필요
 - * 4.30.(금)까지 전자계약 미전환시 5.1.(토)부터 비용상환 불가
 - 전자계약 전환 전 전산누락된 접종기록이 없도록 전산등록 완료 필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다른백신과 접종 전·후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PPSV23 접종시 코로나19 접종일(예정일) 전·후 14일 간격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자세한 사업 내용은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신청 및 백신관리(의료기관용) 매뉴얼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9. 기준) 1부. 끝.

질병관리청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가정의학과 의사사회장, 대한개원내과 의사사회장,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선임공무직	김선주	보건연구사	정행진	보건연구관	김종희	예방접종관리	전결 2021. 4. 15.	
협조자						과장	홍정익	
시행	예방접종관리과-2125	(2021. 4. 1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8387	팩스번호	043-719-8379	/ ektjtwkd@korea.kr		/ 대국민 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